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第 4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5年 12月 23日(土) 11時37分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1. 國道31號線(長坪-平昌間)4車線擴.鋪裝에 관한建議案
2.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등改正條例案
3.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등改正條例案
4. 平昌郡稅條例등改正條例案
5. 平昌郡稅減免條例등改正條例案
6. 平昌郡農村振興基金運用管理條例案
7. 蓬坪都市計劃變更에 대한意見提示의件
8. 寧·平·旌行政協議會規約案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國道31號線(長坪-平昌間)4車線擴.鋪裝에 관한建議案(李慶鎮議員外6人發議)2 面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등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3 面
4.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등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3 面
5. 平昌郡稅條例등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5 面

6. 平昌郡稅減免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5 面

7. 平昌郡農村振興基金運用管理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8 面

8. 蓬坪都市計劃變更에대한意見提示의件(平昌郡守提出) _____ 8 面

9. 蓬坪都市計劃變更에대한意見提示動議(金斗經議員) _____ 10 面

10. 寧·平·旌行政協議會規約案(平昌郡守提出) _____ 11 面

(11時37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95년도 정기회 2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회기운영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주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5년을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

획된 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어지기를 기대하여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1時39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國道31號線(長坪-平昌間)4차선擴.鋪裝에관한建議案(李慶鎭議員의6人發議)

(11時4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국도 31호선(장평~평창간)4차선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국도 31호선(장평-평창간)4차선 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영동고속도로와 군청 소재지를 잇는 도로망의 미흡으로 기업의 투자 기피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걸림들이 되고 있는 국도 31호선중 장평 - 평창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평창군의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구간을 조기에 확·포장하여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한 국도 31호선(장평-평창간) 4차선 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국도31호선 (장평-평창간)4차선 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증改正條例案

4.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증改正條例案 (이상2건 平昌郡守 提出)

(11時42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3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 입니다.

먼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직 정원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의 계장 정원 6급, 즉 지방행정 또는 지방토목 1인을 순증하고, 둘째 계장외의 직원은 자체 상계조정하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원에 기능직10등급 1인과 농촌지도소 기능10등급 1인을 감하여 본청의 재난관리계에 일반직 7급인 지방토목1인, 지방

행정 또는 지방건축 1인을 증원하며 셋째, 산업과의 국가직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3인을 지방직으로 순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형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본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사무분장을 별첨한 18조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參 照 >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

案

·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중改正條例案
(以上2件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5. 平昌郡稅條例중改正條例案

6. 平昌郡稅減免條例중改正條例案
(이상2건 平昌郡守 提出)

(11時47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4항 평창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2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중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선 12월 22일 김종영의원의 6
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함
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
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조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경과조치 없이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법증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95년 1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에 과세 형평을 위해 군세조례중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표준세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할 주민세의 현행 7.5%에서 10%로 인상을 하고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을 하고 둘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가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게만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 그 면제대상을 정신지체, 언어지체, 청각장애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므로써 장애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적용을 하고 둘째 면제조건으로 본인명의 등록뿐만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포함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김종영의원 나

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1995년 1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95년 12월 22일 원안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낱형 자동차가 종래 산업용에서 레저나 일반 승용차로 사용되고

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폐지를 하고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낱형 자동차가 배기량이 높아만 하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또

일시에 세액을 대폭 인상하게 될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인상폭을 소폭으로 인상을 하고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농산물가공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중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원안에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둘째,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셋째, 낱형승용차에 대한 배기량 cc당 세액을 배기량 별로 영업용은 2원, 비영업용은 cc당 20원 내지 45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平昌郡稅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稅減免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稅減免條例중改正條例案에 대한修正案
- (以上3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증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平昌郡農村振興基金運用管理條例案 (平昌郡守 提出)

(11時54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농촌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군의 재정적 부담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현실적 필요성과 재원확보 대책을 충분히 검토후 심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蓬坪都市計劃變更에대한意見提示의件 (平昌郡守 提出)

(11時55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7항 봉평

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견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는 다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입니다.

봉평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77년 9월 26일자로 강원도고시 제157호로 변경결정및 지적고시된 봉평도시계획에 대하여서 무질서한 시가지정비,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져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86만2,000㎡로 변동이 없고

다음은 용도지역은 일부 변동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거지역은 당초 32만7,000㎡ 보다 3만5,110㎡가 늘어서 36만2,110㎡가 되었고 일반 상업지역은 당초 4만1,000㎡에서 2만4,800㎡가 늘어서 6만5,800㎡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은 당초에 149만4,000㎡에서 5만9,910㎡가 줄어서 143만4,090㎡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는 대로,중로는 변동이 없고 다만 소로는 당초에 30개 노선에 6,839m에서 277m가 늘어서 34개노선에 7,116m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은 기존 1개소에서 가산공원을 현실화 시켜서 2,900㎡가 늘어서 23만7,900㎡가 되었고 어린이공원이 1개소에 1,500㎡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시설지구로서 당초에 봉평중고등학교를 현실화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평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蓬坪都市計劃變更決定에 따른議會意見
聽取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 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
포 합니다.

9. 蓬坪都市計劃變更에 대한意見提示動議
(金斗經議員發議)

(11時57分)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한 의견
서를 작성 채택할 순서 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경 의원 발언하십시요.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공청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
각 합니다. 그래서 본건은 평창군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없다
는 찬성의견을 제시할것을 동의 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지금 김두경의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없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
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김두경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
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확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寧·平·旌行政協議會規約案

(平昌郡守 提出)

(12時0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8항 영·평·정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영·평·정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간의 공동해결 과제의 부각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갈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등 입지적 여건이 같은

인접지역간의 합리적 행정수행을 위한 광역행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인접지역인 영·평·정 3개군이 지역의 공동과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명칭은 영·평·정 행정협의회라 하고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등 3개군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및 간사 1인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되며 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순으로 하며 협의회는 각 군간 주민여론, 요망사항등 광역개발등 광역행정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협의회는 정기회와 수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으로 대처하며 협의 회 회기는 일반회기에 따라 정리하고 경비는 구성자치단체의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등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사전배부된 지방자치법 발췌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寧 · 平 · 旌行政協議會規約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영·평·정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모든 회의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써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희망과 기대속에 민선자치 원년을 맞은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므로 민선자치 원년이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펼쳐졌다고 생각하며 이는 군민 모두와 600여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투철한 책임감이 맺어준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2대의회가 구성된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국내외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가 치고 지구의 한 귀퉁이에선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가운데 주변에선 전직 국가통치권자가 부정축재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므로 우리의 치부를 전세계에 알리는 경이할 사건이 연속 보도되어 한해를 매듭짓는 연말을 더욱 어둡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개혁과 변화의 일부 분이라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고 곧은 의지로 오늘의 현실을 슬기롭게 넘겨 번영과 미래를 약속받는 새평창건설에 온정열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5년차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우리 의회가 능동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해가 거듭 될수록 산적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들의 분발을 더 한층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운 제반여건으로는 이들의 마법을 모두 해결하기엔 너무 힘에 겨울 것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이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성찰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착실히 해결하는데 온 정열을 다하므로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몇일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5만여 군민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금년에 못 다이룬 소망들이 모두 성취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95년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 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의 제
4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 합니다.

(12時07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商 滿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申 大 松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財 務 課 長	權 赫 昇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產 業 課 長	金 時 漢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李 基 椿
建 設 課 長	洪 基 杓
都 市 課 長	權 純 喆
民防衛 課 長	金 昌 吉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尹 澈 竣
技術補給課長	李 宇 炯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教 善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21面에 실음)

.....
【 報 告 事 項 】

○ 의안접수사항

- . 국도31호선(장평-평창간)4차선확.포장에관한건의안
-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2건 '95.12.22 - 김종영의원의 6인발의)
-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95년12월15일제출된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청
(이상2건 '95.12.22 - 평창군수제출)

○ 의안처리사항

-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199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
- .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 .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
- . 199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

- . 199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이상6건 '95. 12. 22 - 평창군이송)

○ 일반문서처리

- . 영동고속도로4차선확장공사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진정
- . 하용전교가설에대한진정
(이상2건 '95. 12. 22 - 관계기관 협조요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기능개선 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직 정원으로 되어있던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민방위재난관리과신설로 재난관리계장 정원6급(행정,토목)1명 순증
- 나. 계장 이외의 직원은 자체 상계 조정하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원 기능 10등급(보건) 1명과 농촌지도소 기능 10등급(운전) 1명을 감하여 재난관리계에 일반직 7급(토목, 행정, 건축)2명을 증원,
- 다.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정원 3인을 지방직 정원으로 전환

3. 검토의견

- 가. 정부의 재난관리기구기능개선 계획에 의거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정원이 지방직 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의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됨.
- 나. 기타 체계 및 자구,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정부의 재난관리기구기능 개선 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에 맞게 관리 기구를 개편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군본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 → 재난관리계 신설
- 나.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사무분장 규정

3. 검토의견

가. 지역단위 재난예방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되는 기구의 정원은 가급적 기능적으로 배치 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향후 3년간('96 ~ 98)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 위한 지방세 개정으로 군세조례를 이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득할 주민세율 인상 : 현행 7.5% → 10%

나. 적용시기 :

1) 1996년 1월 1일 이후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함.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 규정 적용

3. 검토의견

가. 주민세의 표준세율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100분의 50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자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증되는 사항으로써, 개정 법률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하여 조세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됨.

나. 기타 체계및 자구,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이 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전장애인에게로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쥘형자동차의 사용 용도의 변화로 종래의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배기량 별로 용도에 따라 세액을 산정부과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 세액을 경감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 확대

: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
에게로 확대

나. 면제조건 확대적용 : 본인명의 등록→부모, 배우자 명의의
등록포함.

다. 쥘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씨씨당 세액을 배기량별로 영업용
은 2원 비영업용은 20-45원 인상함.

3. 검토 의견

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 적용한것은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좌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으로 사용전환이 됨에 따라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일반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에 상당하도록 소폭으로 세액을 인상하여 일시에 세액 부담증가를 억제 토록 하였으나 장래 일반승용차의 기준에 동일하게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것을 사회보장시설 운영 지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나. 기타 체계및 자구.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봉평도시계획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견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이 유

강원도고시 제157호로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된 봉평 도시계획에 있어 무질서한 시가지의 정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용도지역변경

- 1) 일반주거지역 확대 : 당초 327,000㎡ → 336,910㎡
- 2) 일반상업지역 확대 : 당초 41,000㎡ → 65,800㎡
- 3) 자연녹지지역 확대 : 당초 1,016,000㎡ → 1,124,500㎡
- 4) 생산녹지지역 축소 : 당초 478,000㎡ → 309,590㎡

나. 도로(소로)확대 : 30개노선 6,839㎡ → 7,116㎡

다. 공원지역

- 1) 근린공원 : 1개소 223,500㎡ → 2개소 237,900㎡
- 2) 어린이공원 : 1개소 1,500㎡ 신설

라. 학교지역

- 1) 봉평국민학교 : 1개소 9,750㎡ 신설
- 2) " 중학교 : 1개소 15,100㎡ 신설

3. 검토 의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기위한 사전 절차로써 찬성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영.평.정 행정 협의회 규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이 유

전면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간의 공동 해결 과제의 부각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갈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등 입지 여건이 같은 인접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규약안을 제정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구성자치단체 : 3개소 (영월군,평창군,정선군)

나. 회장및위원,간사 : 위원은 군수로 하며 간사는 회장 선임 군의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계장이 되며 회장은 영월,평창,정선 군수순으로 함.

다. 기능및 협의사항 : 각 군간 주민여론, 여망사항등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함.

라. 재정사항 :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하고 경비는 구성자치단체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함.

마. 적용시기 : 1996년도 1월 1일

2. 검토 의견

협의회위원이 선거에 의하여 교체되고 협의회 위치도 3개 군이 1년씩 돌려가며 운영 토록함과 지역간 이해 득실 계산에 의거 자칫 협의회 기능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고 경비 부담 사항이 예산에 계상치 아니되어 부담 사유의 발생시 편법 지출이 불가함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로써 년초 또는 년도말에 본협의회 운영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결과를 각 군의회에 보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